

창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110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5. E 주식회사의 F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리를 판매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피고와 G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구리대금 42,809,800원을 입금하였으나, F 과장이라는 사람은 위 돈을 받은 후 잠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려주면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와 오티피(OTP)기기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약691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구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사기를 당한 것인바, 피고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557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람과 공모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가 위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김은정